

문서번호	맑은환경과-110793
결재일자	2015.9.2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86호

주 무 관	에너지관리팀	맑은환경과장	주민생활복지팀	부 구 청 장
박소은	이윤호	이경화	오영수	09/25 정연찬
협조	홍보전산과장 이진근	도시계획과장 조남성	건축과장 유옥현	공원복지과장 이종한
	도로관리과장 강종훈	보건위생과장 최선락	인사팀장 유재천	예산팀장 이정심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 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 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)	
사업추진 유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 사항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 75,000천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 협 조 ()
이해관계인 유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자 원 활용가능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업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 필 요 성	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대상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동작구 주민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

「조명환경관리구역」 지정 후속 관리계획

■ 관련근거

-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9조(‘13.2.2. 시행)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(서울시, ‘15.7.30.)

■ 관리대상 (공간조명, 광고물, 장식조명)

(단위 : 개)

구분	공간조명(15,384)			광고물	장식조명	비고
	가로등	보안등	공원등			
계	4,405	9,562	1,417	2,781	3,405	

■ 관리계획

- 신규조명 : 설치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및 ‘좋은빛위원회’ 심의 상정
- 기존조명 : 전수조사 실시 및 5년 이내 허용기준 준수하도록 개선 유도

■ 향후계획

- 인공조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·장비 확보, 기존 시설 전수조사 실시

주민생활복지국 (맑은환경과)

주민이 편안한 동작구의 밤 만들기 「조명환경관리구역」 지정 후속 관리계획

서울시 전역이 「조명환경관리구역」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옥외 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에 적합한 빛환경의 형성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-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(2013.2.2 시행)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(서울시, 2015.7.16)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속 조치계획 (서울시 도시관리과, 2015.7.29)

II 지정 개요

- 지정근거 :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9조
- 지정대상 : 인공조명

< 인공조명 관리대상 >

- ◆ 공간조명 :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
- ◆ 광고물 :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(전광류, 돌출간판,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)
- ◆ 장식조명 :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, 숙박, 위락,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

- 지정시기 : 2015. 7월 [시행일 : 2015. 8. 10]
 - 1단계 : 녹지·주거·상업지역은 빛공해 시급성 감안 우선지정('15.7월~)
 - 2단계 : 공업지역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고지 예정('15.12월)
- 지정방법 : 용도지역,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 제1종~제4종 구분

III 조명환경관리구역 세부지정 내역

지정기준 (용도지역,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 제1종~제4종으로 구분)

구분	정의	용도/토지이용현황	비고
제1종	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	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	국립현충원 등
제2종	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·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	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(1종 제외)	노량진근린공원 등
제3종	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	전용, 일반, 준주거지역	주거지역
제4종	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	상업지역	판매시설, 종교시설 등

지정현황

구분	지정현황	면적(㎢)	비율(%)	비고
합 계		16,348	100	
제1종	보전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	1,890	12	
제2종	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(1종 제외지역)	700	4	
제3종	주거지역 (전용, 일반, 준주거)	13,495	83	
제4종	상업지역	263	2	

빛반사 허용기준

대상 조명	측정기준(단위)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
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
공간조명, 전광류 광고물	주거지 연직면 조도 (lx)	최대값	10이하			25이하
광고물	발광표면휘도 (cd/㎡)	최대값	50이하	400이하	800이하	1000이하
전광류 광고물	발광표면휘도 (cd/㎡)	평균값 (24시 전/후)	400/50이하	800/400이하	1000/800이하	1500/1000이하
장식조명	발광표면휘도 (cd/㎡)	평균값	5이하		15이하	25이하
		최대값	20이하	60이하	180이하	300이하

※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둠

IV

세부추진 계획 (관리계획)

신규 조명시설 관리

- 조명시설 설치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빛공해 사전 방지
-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
 - 공간조명 : 설치 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
 - 광고조명 : 광고물 허가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토록 조건 부여
 - 장식조명 : 인·허가 신청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
-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수행
 - 심의대상 :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이상 건축물, 교량, 고가차도 등 구조물, 20세대이상 공동주택, 도로부속 시설물, 주유시설, 미술 작품,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
 - 심의시기 : 조명계획 수립 후 조명시설 설치 전까지(매월 2회 개최)
 - 심의상정 : 도시계획과 주관 서울시 상정

기존 조명시설 관리

- 전수조사를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이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,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향후 5년 이내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
- 빛공해 적용대상 조명현황 (2015.8월 현재)

계	공 간 조 명			광고물	장식조명	비 고
	가로등	보안등	공원등			
21,508	4,405	9,562	1,417	2,781	3,343	

● 전수조사 세부계획

- 조사기간 : 2015. 9. ~ 2016. 8. (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)
- 조사내용 : 설치장소, 설치 인공조명 개수, 밝기 정도, 광원의 종류 등
- 조사방법 : 해당분야 관리부서에서 세부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 실시

구 분	시 설 물	소관부서	비 고
공간조명	가로등	도로관리과	
	보안등	도로관리과	
	공원등	공원녹지과	
광고물	광고물	도시계획과	
	건축물	건축과	
	숙박·위락시설	보건위생과	
장식조명	교량	도로관리과	

- ※ 조명시설 설치·관리 및 시설물 인허가·신고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
- 조치계획 :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개선유도

V

문제점 및 개선방안

빛공해 관련 업무 전문성 부족 및 인력기반 취약

- 빛공해 민원, 조명등 전수조사, 야경경관 관리 등 필요한 인력부족 및 측정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필요
- ▶ 빛공해 민원, 야간경관 등을 감안 별도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
- ※서울시 권고 : 빛공해를 포함한 야간경관 전담조직(팀) 신설

< 시장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관 시 수행할 업무 (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중) >
 ①도시빛 정책 수립·시행 ②빛방사 허용기준 준수, 검사·조사
 ③빛방사 허용기준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④보고·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
 ⑤과태료 부과·징수 ⑥빛공해 민원관리 ⑦좋은빛위원회 심의상정 등

빛공해 측정장비 미비

- 인공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장비 구입예산 확보 필요
 - 측정장비 소요예산 : 휘도계 70,000천원, 조도계 5,000천원
 - ▶ 조도계, 휘도계 등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예산 확보 필요(2016년도 예산)

- ☐ **빛공해를 포함한 야간경관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: 행정지원과**
 - 전기분야 소관사항 임을 감안하여 전기직렬 확보 필요(2명이상)
- ☐ **빛공해 측정장비 예산확보 협조 : 기획예산과**
- ☐ **기존조명 전수조사(1년 이내) 및 관리 세부시행 계획 수립·시행**
: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도로관리과, 보건위생과
- ☐ **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 : 도시계획과**
- ☐ **홈페이지 등 빛공해 홍보 : 홍보전산과**